

의안번호	2209932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5.5.8.
추 계 번 호	25C2393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,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9억 8,000만원(연평균 3억 9,6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7조)	-	-	-	-	100	100	20
자살실태조사 (안 제11조)	130	-	(130)	130	-	130	26
자살예방의 달 (안 제16조)	350	350	350	350	350	1,750	350
합 계	480	350	220	480	450	1,980	396

주: 괄호() 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으로, 현행법에 따라 2023년에 이어 2028년에 자살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)	(제1항)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※(현행법) 5년	의무규정
2	안 제11조 (자살실태조사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※(현행법) 5년	의무규정
3	안 제16조 (자살예방의 달)	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달(자살예방주간 및 자살예방의 달을 포함한다)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7조 (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)	○	-
2	안 제11조 (자살실태조사)	○	-
3	안 제16조 (자살예방의 날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과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최근 사업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
 - (자살예방기본계획) 1차('04~'08년), 2차('09~'13년), 3차('16~'20년), 4차('18~'22년), 5차('23~'27년) 기본계획까지 수립하였으며, 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1억원 편성
 - (자살실태조사) 1차('13년), 2차('18년), 3차('23년) 실태조사까지 실시하였으며, 3차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1억 3,000만원
- 자살예방의 달 지정에 따른 다양한 행사 및 활동 사업 비용은 유사사례인 “청소년의 달 행사” 사업¹⁾을 준용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해당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달 동안 다양한 강연·체험·전시 프로그램,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므로, 유사사례로 준용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,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안 제7조)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
 - 추계기간 동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 사업 횟수는 2회 발생
 - 현행법에 따라 2028년부터 수립해야 할 자살예방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추계기간(2026~2030년) 중 2027년, 2030년 추가 사업 실시
 - “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”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(1억원)를 준용하며, 연구용역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1년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7조)	-	(100)	-	-	100	100	20

주: 괄호() 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으로,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재정소요액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0년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안 제11조) 자살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총 1억 3,000만원(연평균 2,600만원)으로 추계
- 추계기간 동안 자살실태조사 실시 시기 단축에 따른 추가 사업 횟수는 2회 발생
 - 현행법에 따라 2026년부터 실시해야 할 자살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추계기간(2026~2030년) 중 2회의 추가 사업 실시
- “제3차 자살실태조사” 비용(1억 3,000만원)을 준용하고, 실태조사는 2026년, 2029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-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자살실태조사 실시(안 제11조) 시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살실태조사 (안 제11조)	130	-	(130)	130	-	130	26

주: 괄호() 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으로, 현행법에 따라 2023년에 이어 2028년에 자살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안 제16조)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총 17억 5,000만원(연평균 3억 5,000만원)으로 추계
- 자살예방의 달 지정에 따른 다양한 행사 및 활동 사업 비용은 유사사례인 “청소년의 달 행사” 사업을 준용하고, 개정안에 따른 해당 사업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
 -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“청소년의 달 행사” 사업 예산으로 2025년 3억 5,000만원 편성
 - 추계기간(2026~2030년)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자살예방의 달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살예방의 달 (안 제16조)	350	350	350	350	350	1,750	3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,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9억 8,000만원(연평균 3억 9,600만원)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7조)	-	-	-	-	100	100	20
자살실태조사 (안 제11조)	130	-	(130)	130	-	130	26
자살예방의 날 (안 제16조)	350	350	350	350	350	1,750	350
합 계	480	350	220	480	450	1,980	396

주: 괄호() 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으로, 현행법에 따라 2023년에 이어 2028년에 자살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